

제324회 임시회  
2013. 10. 17(목)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0. 17(목)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노광기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3년 9월 16일
-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일

다. 상정일자 : 2013년 10월 8일

-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광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68조에 따라 신체적 기능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의 설치(안 제3조)
- 센터의 주요 기능(안 제4조)
  - 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교육
- 관련 정보 수집, 안내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구 관련 사업
-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보조기구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광역 보조기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음
  - ※ 대전·대구(2010), 부산·광주(2011), 경기(2012), 충북(2013)
-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6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 정한 장애인보조기구를 말한다.
3. “보조기구 서비스”란 장애인보조기구 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대체·향상시키는 전문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
2.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사용자 훈련
3. 보조기구 정보 수집·안내 및 홍보·인식개선사업
4. 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5. 보조기구 관련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구 관련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도지사는 센터를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